

# 통일법정책 연구제안서

## ■ 연구과제명

대북 손해배상 특별법 제정방안  
-북한 저작권료의 지급 및 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 ■ 연구내용

### 1. 연구주제

#### 가. 배경 및 개요

현재로서는 북한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시킬 방안이 부재하다. 이 연구는 '저작권료 대납' 안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의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채권 유동화 방식으로 대북 손해배상 채권을 마련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특별법 제정의 형태로서 제시한다.

#### 나. 제안 내용의 특징

이 연구는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저작권 관련 연구와 남북한특수관계 연구, 대북채무 연구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① 판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법적 성격을 다루며 북한의 저작권 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② 북한을 당사자(피고)로 하는 재판의 확정판결을 통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밝히고 ③ 북한 저작권료의 지급 및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 1. 북한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보장의 실태 파악

남북합의서나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다룬 판결에서 북한은 사실상의 국가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반대로 단체의 특성이 불명확하여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불명확한 성격을 가지는 북한이 우리 국민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아울러 사회주의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북한 창작자의 저작권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저작권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2. 손해배상 채권의 현실적 이행 방안의 부재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한 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북한을 재판 당사자인 피고로 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서 피해자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서를 가지고 채권을 집행하여 피해자가 금전적 지급을 받게 하나, 북한이 피고인 경우 현실적으로 채권의 집행 및 금전적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사실상 금전적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3.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 방안 마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 손해배상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의 신속한 현실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대북 손해배상 채권의 조속한 해결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1) 우리나라에 예치되어 있는 북한 저작권료 중 북한 정권 소유의 저작권료를 통한 손해배상 대금 지급 방안을 제시하고, (2) 저작권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다루보고자 한다.

###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가. 연구내용

① 손해배상 채권의 첫번째 해결방안으로서, 판례 재해석을 통한 북한 저작권료 일부의 사용 방안 ② 손해배상 채권의 두번째 해결방안으로서, 정부를 통한 피해자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방안 ③ 두 가지 해결방안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적 기반 마련을 중점으로 연구한다.

#### (1) 손해배상 채권의 첫 번째 해결방안- 판례 재해석을 통한 북한 저작권료 일부의 사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2020년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5506)을 계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방안과 대북 손해배상 이행에 관한 문제가 쟁점화되었다. 따라서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 북한 작가의 소설 등의 저작권료를 북한의 손해배상 피압류채권으로 활용하는 ‘저작권료 대납’ 안이 제시되었는데, 하지만 법원은 2022년 뒤이은 판결에서 북한이 권리능력이 있는 소송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권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북한 저작권료가 북한의 피압류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이 연구는 2022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공탁된 북한 저작권료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저작권료 대납’ 안이 이행될 수 없음을 규정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데, 법리 면에서 북한의 국가 체제 및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남북한특수 관계론의 차원에서 북한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저작권료의 성격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1) 북한이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한 2020년 판결에서는 북한과 김정은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2년 판결에서는 앞선 형사재판 판결의 논리와 달리 북한에 있어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기존의 정의가 아닌 새로운 정의를 도출하였다.

비록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요건 등 민법의 구체적 조문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각 조문을 비교하여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전제정에 가까운 북한의 헌법에 ‘사원[공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정관[헌법]을 변경’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는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 및 준국가단체가 법률적 권리능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국제법 및 타국의 법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과 같은 비민주적 헌법을 가지는 중동 전제정이나 도시국가에 대해서도 외교관계 및 국가면제 등의 권리가 인정되고, 심지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분리독립 세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중 일정 부분을 인정한 ICJ(국제사법재판소) 판례가 존재하기에 북한의 실질적 존재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또한 북한 법제에서 명목상 존재하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 산하의 직능단체 하에서 작가 및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법제도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가 통일 이후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북한 창작자들 역시 우리 국민으로서 저작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 판례는 북한 저작권법이 국가와 당 산하기관인 저작권사무국의 전면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사무국의 성격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보다 대리중개업자에 가깝다고 규정하였다. 즉 북한 저작권법제 하에서도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 개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료의 권리주체 역시 북한 내지 저작권사무국이 아닌 창작자 개인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창작자들이 저작권료를 비롯한 권리들을 모두 보장받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내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재산권 및 저작권정책을 둘러보고, 이후에는 북한 작가동맹 등에 대한 심화 분석을 통해 북한 내 실질적인 권리보장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작권료의 송금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저작권료의 전달 과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북한 작가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송금이 중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3) 북한 국영기관의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분석

저작권을 가지는 개별 저작자가 비교적 명확한 문학작품 등과 달리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당 산하 국가기관은 그 주체 및 저작권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운영 및 관리주체가 북한과 김정은이라는 점이 타당하다고 입증된다면 해당 저작권료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과거 사례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현장 조사,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손해배상 채권의 두 번째 해결방안- 피해자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북한의 대외채무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북한 채권의 유동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투자자들은 미래에 북한의 대외 관계가 개선되거나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유동화된 북한 채권을 구입, 보유하게 된다.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 유동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다루어보기에 앞서, 북한 관련 채권이 유동화되었던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에서 북한의 부실 채권이 대량으로 금융 시장에 유통되고 거래된 선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볼 것이다. 또한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통일 독일 정부가 구동독 정부의 채무를 승계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채권 유동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채권 유동화의 해외 선례로 베트남 관련 채권 사례를 연구할 것이다. 1994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베트남 관련 채권이 10.8배 급등하기도 했다. 당시 베트남 관련 채권의 급등은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서 비롯되었으나,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80년대부터 이루어져왔던 베트남의 도이머이(개혁개방)와 90년대 외국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채권의 유동화 방안이 실행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독일은 구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던 동독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채권 유동화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다루어볼 것이다.

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관련 채권을 미래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당장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유의미한 개선이나 통일, 혹은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오랫동안 대북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북한 채권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러한 정세의 변화 없이는 단기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대북한 채권이 활발하게 거래되거나 이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서는 시장에서의 대북한 채권 유동화의 현실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동화 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을 유동화하기에 앞서 금융시장에서 북한채권의 거래 가격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손해배상 채권 유동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북한채권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 관계의 개선 정도, 북한의 대외 정책 및 국제사회로의 진출

가능성 등에 따라 북한 채권의 가격이 변화하며, 이러한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는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 과거 사례들에서 북한 채권의 거래 가격의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를 연구할 것이며, (2) 이를 위해 북한 채권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량할 수 있는 지표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한 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투자가치를 계량화한 통계 자료를 정부가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구상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채권 유동화 절차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자산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 조항을 살펴볼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격에 대해 조사하고, ‘자산유동화->채권양수도->채권의 양도와 신탁-> 유동화증권 발행-> 매각 및 대금 지급’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 열람을 통해 파악할 것이다.

금융 시장에서 북한 채권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 및 호가 기준 채권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IFR(International Finance Review) 등의 금융전문지에서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북한 채권의 호가와 투자가치를 열람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채권을 비롯하여 북한 관련 자산을 구조화, 유통시키는 펀드 및 금융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1997년 북한의 디폴트 선언 직후 유럽의 대북 부실 채권을 유동화했던 프랑스 은행 ‘BNF 파리바’, 2007년부터 북한 관련 자산 투자를 중개했던 미국의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사를 비롯하여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메일 등의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 유동화의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3)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적 기반 마련

#### (3)-1. 특별법의 구성- 북한 저작권료를 통한 배상의 법제적 기반

북한 저작권료 중 북한의 국영기관의 소유로부터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앞선 1부분에서 다루었던 원저작자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나, 이를 바로 이행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우선 북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존재하고, 또한 앞서 북한 저작권자가 주체가 되어 한국 출판사에 저작권료 불지급 소송을 걸어 승리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령 북한의 권리능력과 북한 및 국영기관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배상금 지급체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 손해배상 특별법(가제)” (특별법)은 우선 북한이 국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남북한특수관계론적 해석에 합치하면서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서 그 실체 및 구성원의 성격, 구성 및 운영체계 등이 명확한 비법인사단 내지 사실상의 정치적 단체로서 법적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별법은 통일부 장관이 조선중앙TV와 같은 북한 정권 산하의 국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곧 북한의 소유와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현재 북한으로의 저작권료 송금을 막고 있는 UN제재가 해제될 시를 대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3)-2. 특별법의 구성- 채권 유동화를 통한 배상을 위한 법제적 기반

대북 손해배상 특별법에서 채권 유동화에 관해 어떠한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특별법에서 채권 유동화를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북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채권 유동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 투자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 줄 이득 또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년대 베트남 채권 가격의 급등 사례, 통일 이후 서독의 동독 대외채무의 승계 사례 등을 토대로 북한채권의 투자가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공시한다면 채권 유동화는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특별법에서는 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제적 가치,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채권의 유동화 이후에도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 시장 개입의 한 측면으로서 대북 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북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이 북한의 대외 채무를 승계하게 될 것인데, 북한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통일한국 정부는 채무 변제에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일 혹은 그에 버금가는 지정학적 변화에 앞서 조기에 정부차원에서 대북한 채권 매입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북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시 대북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절차를 설명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자산유동화’의 개념을 참고하여 조항을 작성할 수 있다.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 유동화의 법적 근거를 해당 법률에서 차용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의 개념이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이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자산의 유동화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근거조항에 기반하여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유동화 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대금의 지급이라는 일련의 유동화 과정을 특별법에서 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언이며, 구체적인 내용 및 규율 대상 확정의 문제는 ‘대북송금특별법’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체계의 구성과 내용과 합치하는 한편, 대상 판례 및 기타 연구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 4. 기존 연구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 연구와의 중복(  예  아니오)
-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중복되는 경우에만 기재)

북한의 국가성 및 권리능력을 다룬 선행 연구

북한의 국가성이나 북한 주민의 법적 성격은 남북한특수관계론을 국제법적, 경제협력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지만, 2022년 판결에서 지적된 북한의 법적



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한반도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제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승계 이상의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서는 대북 손해배상 채권 문제에 대해 ‘국가 승계’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북한 정권 소유의 ‘저작권료’를 통한 지급 방안 및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계획하고자 한다.

한편, 구체적으로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룬 연구도 있었다. 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구제 방안 연구(한수연)에서는 1990년대 후반 유럽 은행이 대북한 채권을 유동화하여 손실을 만회한 사례를 제시하고, 현행법상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유럽은행이 유동화한 대북한 부실채권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채권의 유동화의 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인으로 정부의 신용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구의 말미에서 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입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법적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5.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 기대효과

‘저작권료 대납’ 안이 이행될 수 없음을 규정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데, 법리 면에서 북한의 국가 체제 및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차원에서 북한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법이 북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통일 이후 재산권 등의 재확립에 있어서 기존 소유권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판례 평석을 토대로 통일 이후 북한에 존재하던 단체 및 기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결정은 남북이 맺어온 각종 합의서 및 실무협정을 포함해 앞으로의 남북간 합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과에 대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피해보상을 비롯한 청산 및 용서의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특별법 정리 혹은 재해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해결방안을 다루고, 이를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경문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예치되어 있는 북한의 저작권료 중, 북한 정권 소유로 분류되는 저작권료를 대북 손해배상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금전적 배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 23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 공탁금 중 대부분이 조선방송위원회(조선중앙TV)를 비롯한 국영기관 앞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각각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이 대부분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면을 볼 때 피해자 대부분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른 또 하나의 대북 채권 유동화 방안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정권 소유의 저작권료의 손해배상 대금 지급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부족한 손해배상 대금에 대해 '대북 채권 유동화'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유동화하여 대금을 마련함으로써, 앞서 다른 저작권료 지급 방안을 보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위의 2가지 손해배상 방안이 단순히 일회성의 정책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적 실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북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우리나라 법제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여 신속하면서도 현실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북한의 체제개혁이나 대외 관계 정상화가 어려운 구조적 현실에서 북한채권의 투자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북 채권의 유동화에 대한 국제적 제한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래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북한 채권의 거래나,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손해배상 채권 유동화가 대북제재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북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보다 면밀한 입법적,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나. 활용방안

본 제안서에서 계획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 손해배상 채권 문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난관을 마주해왔던 대북 손해배상 채권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많은 논쟁만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북한의 저작권료 일부를 손해배상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의 유동화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금전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북 손해배상 채권 해결방안들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국내외 정치적 국면의 변화와 상관없이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정되는 특별법은 '자산관리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의 기존 관계 법령들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대북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북한을 피고로 하는 재판의 확정판결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논문

- 김기현, 이정철. 2018.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21권1호, 174-207.
- 김용훈, 2023,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서울법학* 31.1.
- 김찬동, 2022, “북한 저작권 법령 개정 동향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따른 쟁점”,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사법정책연구원 발표자료집).
- 김태훈, 2022,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북한법연구* 28호.
- 송진호, 2022, “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쟁점 토론편”,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사법정책연구원 발표자료집).
- 육소영, 윤권순. 200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권 3호.
- 탁용달, 2018. “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2(1), 29-56.
- 한수연, 2017,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구제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명섭, 2016,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47(4), 161-19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 Levitsky, S. L. 1964. “Introduction to Soviet Copyright Law“. *Law in Eastern Europe*. Vol. 8. Leiden: A.W. Sythoff. LCCN 58-33118.

### 단행본

- 최유정, 한하린, 2021.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Newcity, M. A. 1978.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ISBN 0-275-56450-9.

### 법령 및 판례

- 대북송금특별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북한 헌법(2019.8.29. 개정).
- 북한 발명법(2014.12.10. 개정).
- 북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13.6.11. 개정).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6. 08. 17. 채택.
- 서울동부지법 2022. 8. 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7. 7. 선고 2016가단5235506 판결.
-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General List No. 141,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22 July 2010.